



의안번호	제109호
------	-------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7. 23.

논산시 출산장려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09호
----------	-------

제출연월일 : 2021. 7. 23.
제출자 : 논산시장

1. 개정이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및 행정기관 등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신청·처리로 임산부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관련 용어 변경(출산지원금을 출산장려금으로)(안 제1조부터 제14조)

-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출산을 개인적 차원에서 전 사회적 차원으로 분위기를 전환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증액 변경(안 제6조제1항)

- 저출산의 배경이 되는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증액 지원하고자 함.

다.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처리 항목 신설(안 제9조의 2제1항, 제2항)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임신·출산 서비스를 통합 신청·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불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06. 9. ~ 06. 30.(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불임 참조

6) 충청남도소관실과 :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정책과(☎ 041-635-2613)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출산장려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출산장려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출산율 저하로 인한 관내 인구감소 문제”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예비맘”을 “예비부부”로, “여성 또는 임신 전 여성”을 “남·녀 또는 첫 임신 전 부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9.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0.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서비스를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출산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임신·출산·양육지원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호 중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호 중 “예비맘”을 “예비부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프로그램”을 “경제적 지원 및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지원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제5조제1항 중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로 두어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지원금 기준 등”을 “장려금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 100만원 이내
2. 둘째아 200만원 이내
3. 셋째아 300만원 이내
4. 넷째아 400만원 이내
5. 다섯째아 이상 700만원 이내

⑤ 장려금 신청 이후, 신청 기한 내 신생아의 출생순위가 변동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⑥ 신생아의 출생순위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사망한 아동
2. 입양한 아동

제7조의 제목 “(지원금 신청 등)”을 “(장려금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지원금”을 각각 “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신생아의 출생일”을 “신생아의 출생일(제5조제3항의 경우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중 “지원금”을 각각 “장려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건강관리 및 출산용품지원”을 “건강관리 및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유지 및 임신·출산·양육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추가·본인부담금 환급지원 및 산모가정 큰아이등 가사돌봄지원·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난임지원, 기저귀지원 등 출산율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비혼·만혼 및 고령임신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예비부부 등 건강검진비 지원과 임신·출산이 기쁨이 되는 출산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임신·출산관련서비스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청 가능한 항목 일부를 통합하여 신청·처리 할 수 있다. ②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논산시 보건소 또는 읍·면·동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원금”을 각각 “장려금”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중 “출산지원금”을 각각 “장려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기준의 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0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건강도시지원 과 장	이 혜 란
안	모자보건팀장	김 수 정
자	담당자	전 영 은 (746-8062)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주민등록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출산자 (산모)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급부 (충남 논산시)	[] 출산장려금/일시금 지급	[출산 장려금 거주기간 확인] ※ 해당란에 체크 적합, 3개월 후 적합, 부적합)			
	※ 6조5항 초기지원	1차 신청일: 20 년 월 일(째/ 만원) / 2차 신청일: 년 월 일 (째/ 만원)			
	-첫째아 100만 -둘째아 200만원	▶ 거주기간 :부(), 모(), 기타() : 20 . . . ~ 20 . . .			
	-셋째아 300 -넷째아 400만원	▶ 신생아 출생일 : 20 . . .			
	-다섯째아 이상 :700만원이내	[] ()째 자녀(이름:) [] 금액 (만원) [] 신생인 이름: /신생아와의 관계 [] 진급대상자(부 모 아기 이름: _____) [] 은행/계좌번호: ※ 예금주 = 부 또는 모, 아기			
	[] 논산맘산모꾸러미	※ 수령지 주소 :			
	[] 다자녀 기저귀 지원 2022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회) ☎ 다자녀 이상(2022년 이후 둘째이상 출산장려금 대상자 ☎ 041) 746-8063			
	[] 유축기무료대여	(출산 후 1개월간 대여) ☎ 사전 예약제로 보건소 전화 문의 ☎ 041) 746-8064, 8065, 8066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예 [] 아니오		
	아동수당	[] 아동수당	2. 복수육아 여부 :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행복카드신청	[] BC카드 (은행) ※ IBK기업, 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우리, 전북, 신협, 제주, 우체국, 부산, 수협, 하나은행 신청 가능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전기료 경감		* 신규 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를 선택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담자녀(3명이상) 복지기초료 경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담자녀(3명이상) 지역난방사업자료 경감	[] 출산가구 [] 담자녀(3명 이상)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결과 통지 방법	성 명	출산자와의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논의원 접수장면으로 신청합니다.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mm × 297mm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급여 계좌	성 명	출산부록의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암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아동수당, 해신급여는 암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 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이동, 가정위탁이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공무원	(주민등록본, 위탁 등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
참고사항	1. 신청하는 대로 출생자 주민등록증을 출산부에 기재하는 경우 출산부에 출산자의 주민등록증을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활용·제공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해당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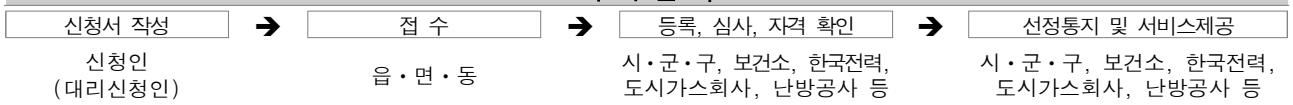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 · 접수대장(제6조제1호 관련)

연번	읍면동	지원대상자					신생아			신청일	신청 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 번호					
		부 또는 모					성명	출생일	출생 순위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 번호	의료 보장 (보험 보호)													

[별지 제 3호서식]

논산맘 출산용품(임신/출산) 지원 신청 · 접수대장(제9조제3항 관련)

연번	구분 •임산행복꾸러미 •출산탄생꾸러미	지원 날짜	행복/탄생꾸러미 대상자			연락처	임신 주수	분 만 예정일	지원 물품	수령자 (서명 또는 인)	비 고
			이름	생년 월일	주소						

[별지 제4호서식]

논산맘 산전검사 지원 신청 · 접수대장(제9조제3항 관련)

연번	구분 산전검사 종류 •초기 건강검진 •기형아 검사(1.2차) •기형아 검사 3차	지원 날짜	산전검사 대상자			연락처	임신 주수	분 만 예정일	지원 내용	수령자 (서명 또는 인)	비 고
			이름	생년 월일	주소						

[별지 제5호서식]

논산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청 · 접수대장(제9조제3항 관련)

연번	구분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날짜	건강검진 대상자			연락처	결혼 (예정)날짜	지원내용	수령자 (서명 또는 인)	비고
			이름	생년 월일	주소					

[별지 제6호서식]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small>* 엽산제 등 택배 수령의 경우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임신정보 작성이 불필요합니다.</small>									
임신 정보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번호)	()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					
	다태아 구분	[] 단태아	[] 다태아						
<small>*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에너지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가족사항”란 작성</small>									
가족 사항	임산부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주소 기재)		세대주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精油체통	천북, BK제약, 후루국, SC제약, (경남, 울릉) 대구진정우카농, 퀴밀, 퀴덴, 삼성, 씨트					
			<small>* 실금신청자와 경우 밝혀고 희망 카드상 및 환원카드를 혼용할 수 있습니다.</small>						
			<small>*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small>						
	[] 엽산제		수령 방법	[] 택배 수령	도로명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를 경우 작성)				
	[] 철분제								
	[] 모자보건수첩								
	[] 맘편한KTX		멤버십 번호	<small>*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small>					
	[]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small>*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small>						
	[] 에너지이용권 ※ 신청 기간에만 (21.5.21~21.12.31.)		수급자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생계·의료급여			
			가구원수	[] 1명	[] 2명	[] 3명 이상			
			주거형태	<small>[] 다가구 : 다세대주택(1개의 주소에 2가구 이상 거주) [] 아파트 : 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 연립주택 : 단독주택(1개의 주소에 1가구만 거주) [] 상가 : 공장 · 비닐하우스 등 [] 출판시설(여의숙 등) · 다용도상설시설(고시원 등) [] 종교 · 토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small>					
하점기			<small>[천카상카드(유급차감)] , 전기 회사명:)(동, 호)</small>						
동점기 (이용권방식 택1)			[] 실물카드	[] 가상카드 * (유급차감) * 에너지원택1	[] 전기(고객번호:) [] 토시가스(납부자번호:) [] 지역난방(사용자코드:)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지원 유형	<small>[]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 단태아 ([] 인력1명 [] 인력2명) [] 임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짐한 산모 + 다태아</small>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임신부(생계)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예외 지원대상 (해당자만)	<small>[]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 가정 [] 미출산부모 산모 [] 기타</small>					
			서비스제공장소	[] 자택	[] 기타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충남 논산시)	임산부 저율주차장 스티커 발급	[] 자동차 (소유자명: 차종/차명: , 생년월일 , 임산부와 관계:)
	임산부 앰블럼 지원	[]
	초보맘 출산준비교실	[]
	산후 몸아이 편한 우리집 가사돌봄지원	[] 신청일수(일), 산모 · 신생아 제외 돌봄인원(명)

위와 같이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임신확인서(임신정보를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경우 제출 생략) 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의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의사진단서(질병코드 포함), 새터민등록확인서, 육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류 등) 4. 에너지이용권 : 가상카드 선택 시 영수증 또는 고지서(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생계급여증명, 의료급여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한회 까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및 보건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명(의사면허번호))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및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제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합니다.
3. 지원기간은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분만예정일부터 1년까지'입니다.
4. 지원기간 중에 요양기관에서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및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결제가 가능하며,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잔여 포인트가 자동 소멸됩니다.
5.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를 제공(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명(의사면허번호))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신청한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업무제

1. 업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 · 등록되어야 합니다. 신고 ·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산부(기 등록된 임산부는 해당 사항 없음)가 업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간: 5년,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분만예정일, 다태아 구분)하여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 ·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철분제

-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택배 수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업산 · 철분제만 가능하며, 의약품으로 분류된 업산 · 철분제 수령 및 구체적인 임신·출산 관련 정보 등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매편한KTX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편한
KTX

2. 매편한KTX는 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철도공사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매편한KTX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이 중지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이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성·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에너지
이용권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대상자 자격판정자료(신청서, 통지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가구정보,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이용권 실물카드 제작 및 배송, 가상카드(요금차감)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혼위·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
보유기간	5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성·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2.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환급은 보건소 1층 건강도시지원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초본, 통장사본

※ 자세한 문의: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041-746-8063(모자보건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임산부 전용 주차장 스티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되어야 합니다. 신고·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산부(기 등록된 임산부는 해당 사항 없음)가 임산부 전용 주차장 스티커를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간: 5년, 제공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분만예정일, 다태아 구분)하여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사용가능하며 관내 임산부주차장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3.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보건소(2층 모성보건실)로 직접 수령해야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임산부 엠블럼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되어야 합니다. 신고·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산부(기 등록된 임산부는 해당 사항 없음)가 임산부 119 구급대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간: 5년, 제공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분만예정일, 다태아 구분)하여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 명당 엠블럼 한 개로 제한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전용
주차장
스티커

임산부
엠블럼
지원

- 초보맘
출산준비
교실**
1. 사전신청으로 진행되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은 논산시보건소(041-746-8063)로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3. 만들기 재료 배송 등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주소와 연락처가 강사에게 전달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맘(MOM)
편한
우리집
산후
큰아이 등
가사돌봄
지원**
1. 맘편한 산후 큰아이등 가사돌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해야합니다.**
 2. 맘편한 산후 큰아이등 가사돌봄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장소가 논산시이어야합니다.
 3. **최대 세명까지 지원합니다.**
 4. **재발급 불가합니다.**
 5. **쿠폰 일수, 인원수 변경 불가합니다.**※ 일정 추가 변경 시 제공기관 지침에 의해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6.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보건소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를 소급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며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확인함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출산율 저하</u> 로 인한 관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자녀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 <u>출산지원금</u>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는 경우에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 <u>출산장려금</u> (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 “ <u>예비맘</u> ”이라 함은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u>여성</u> 또는 임신 전 여성을 말한다.	8. “ <u>예비부부</u> ”----- 남·녀 또는 첫 임신 전 부부를 -----.
<신 설>	9. “ <u>입양아동</u> ”이라 함은 「 <u>입양특례법</u> 」에 따라 입양된 만18세 미만

<신 설>

<신 설>

제4조(출산장려사업) 시장은 임신·출산·양육지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출산지원금 지원
2. (생 략)
3. 예비맘 및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등 건강관리
4. 임신·출산·양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
5. (생 략)

<신 설>

<신 설>

6. ~ 7. (생 략)

제5조(지원대상)

- ①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의 사람을 말한다.

10.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서비스를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출산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출산장려사업) 시장은 임신·출산·양육지원과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려금----
 2. (현행과 같음)
 3. 예비부부 -----

 4. ----- 경제적 지원 및 프로그램 ---
 5. (현행과 같음)
 6.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지원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8. ~ 9.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 제5조(지원대상)
- ① 장려금-----

출생일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생 략)

<신 설>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생아
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를 3개월 이상 계
속하여 시로 두어야 한다.

제6조(지원금 기준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전검사 및 출산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맘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제6조(장려금 기준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 100만원 이내
2. 둘째아 200만원 이내
3. 셋째아 300만원 이내
4. 넷째아 400만원 이내
5. 다섯째아 이상 700만원 이내

<삭 제>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7조(지원금 신청 등) ① 읍 · 면 ·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온
라인 신청방법에 의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 · 면사무소, 동행
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지원금의 지원절차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장려금 신청 이후, 신청 기한
내 신생아의 순위가 변동되는 경우,
차액을 추가지원할 수 있다.

⑥ 신생아의 출생순위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사망한 아동

2. 입양한 아동

제7조(장려금 신청 등) ① -----
----- 장려금

-----.
-----.

② ----- 장려금 -----
-----.

1.~2. (현행과 같음)

③ 장려금 -- 신생아의 출생일(제5
조제3항의 경우 출생아의 출생신
고일)-----
-----.

제8조(지원절차) 장려금-----

는 다음과 같다.

1.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전산망 자료 및 가족관계 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신생아의 주소, 출생일, 출생순위를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2.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면 매월 1일 전월 지원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논산시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3. 보건소장은 매월 지원금 신청·접수대장을 받아 당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4. 보건소장은 지원금 입금 후 자체 없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입금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5. (생략)

-----.

1. -----

----- 장려금 -----
-----.
2. -----
---- 장려금 -----

-- ----- 장려금 -----

-----.
3. ----- 장려금 -----

-----.
4. ----- 장려금 -----

-----.
5. (현행과 같음)

제9조(건강관리 및 출산용품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외에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및 지원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제9조(건강관리 및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

① -----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 유지 및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
-----.

② 시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본인부담금 환급지원 및 산모가정·큰아이등 가사돌봄지원·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난임지원, 기저귀지원 등 출산율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비혼·만혼 및 고령임신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예비부부 등 건강검진비 지원과 임신·출산이 기쁨이 되는 출산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의2(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 신청·처리) ① 시장은 임신·출산관련서비스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청 가

	<p><u>능한 항목 일부를 통합하여 신청·처리 할 수 있다.</u></p> <p><u>②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u></p> <p><u>에는 별지6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논산시보건소 또는 읍·면·동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u></p>
제13조(환수조치)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자가 <u>지원금</u> 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u>지원금</u> 을 환수할 때에는 <u>출산지원금</u> 지원신청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p>제13조(환수조치) ① ----- ----- <u>장려금</u>----- ----- -----.</p> <p>② ----- <u>장려금</u>----- ----- <u>장려금</u> ----- ----- -----.</p>
제14조(대장등 비치)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u>출산지원금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u> 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p>제14조(대장등 비치) ----- ----- -- <u>장려금</u> ----- -----.</p>

[별지 제1호서식] (제7조제2항제1호 관련)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20 . . .	다문화 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 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출산자 의 관계	휴대전 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휴대전 화 (집전화)			
도로명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 와 관 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동거여부	주 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 주소를 기재							
지방 자치 단체 (충남 논산시)	[] 출산자와 금지자		[출산 지원금 거주기간 확인] * 해당란에 체크 적합, 3개월 후 적합, 부적합 ▶ 거주기간 :부(), 모(),기타() : 20 . . . ~ 20 . . .				
	[] 출산자와 금지자		▶ 신생아 출생일 : 20 . . .				
	[] () 째 자녀이름 : [] () 신생아와의 관계 [] 금액 ([] 시금대상자부 모 아기] 이름 [] 은행계좌)		▶ [] () 째 자녀이름 : _____ [] 금액 _____ [] 신생아 이름 : _____ /신생아와의 관계 _____ [] 시금대상자부 모 아기] 이름 : _____ [] _____ ※ 예금주 = 부 또는 모, 아기				
	[] 유축기 무료 대여		[] 논산맘산모고리 [] 수령자 주소 : [] 출산예후증정여권 (출산 4주~8063 ☎ 다자녀 이상(2022년 이후 둘째이상 출산)				
	[] 생체아 아산기자기 지원		[] 유축기무료대여 (출산 후, 1회) ☎ 생체아 이삼 출산지원금 대상자 ☎ 041) 746-8064, 80 				
공동서비스 양육수당 지원 해산 급여 지원 (생계주거의료급여급자 대상)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기료 결감 다자녀(3명 이상) 도시 가스료 결감	출생자 이름 (출생자 모두 기재)		신청 내용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증액신청 불가				
			[] 출산비용 지원(등록 장애인 (1~6급/출산한 경우만)) ※ 사산의 경우 별도 신청 / 해산급여와 증액 신청 가능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 다자녀(3명 이상)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 의 관 계	대상서 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암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input type="checkbox"/>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년 월 (서명 또는)							
는 산 시 장 귀 하							
※ 본 서식의 급부영장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mm×297mm[백지]							
※ 본 서식의 급부영장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210mm×297mm[백지(80g/m ²) 또는 증설지(80g/m ²)]							

[별지 제1호서식] (제7조제2항제1호 관련)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20 . . .	다문화 가정 여부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출산자(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지 주소를 기재						
자족 사항	세대주 와 관 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동거여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지급출장장려금/일시금] [출산 장려금 거주기간 확인] * 해당란에 체크 적합, 3개월 후 적합, 부적합 ※ 6조(5)항 추가지원 1차 신청일: 20 년 월 일(제/ 만원) / 2차 신청일: 년 월 일(제/ 만원)						
▶ 거주기간 :부(), 모(),기타() : 20 . . . ~ 20 . . .						
▶ 신생아 출생일 : 20 . . .						
지방 자치 단체 급부 (충남 논산시)						
[] () 째 자녀이름 : _____ [] 금액 _____ [] 신생아 이름 : _____ /신생아와의 관계 _____ [] 시금대상자부 모 아기] 이름 : _____ [] _____ ※ 예금주 = 부 또는 모, 아기						
[] 논산맘산모고리 [] 수령자 주소 : [] 출산예후증정여권 (출산 4주~8063 ☎ 다자녀 이상(2022년 이후 둘째이상 출산))						
[] 유축기무료대여 (출산 후 1개월간 대여) ☎ 시전 예외로 보건소 전화 문의 ☎ 041) 746-8064, 80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아동수당 [] 해산급여		
	아동수당			[] 아동수당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기본지원대상 [] 기자귀 ([] 국기초 [] 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 [] 기기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국민행복카드 ([] 은행계좌 [] 카드 [] 농협 [] 신한 [] 신한카드 [] 신한은행) [] 국민행복카드 신청 [] 출생비용 지원(등록 장애인) [] 전기료 결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출생비용 지원(등록 장애인)			[] 출생비용 지원(등록 장애인) [] 전기료 결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보조출생					
성명 출산전액 대상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결과 통지 방법 <input type="checkbox"/>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논위생 청탁금지 협약서 를 신청합니다. 인)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210mm×297mm[백지(80g/m²) 또는 증설지(80g/m²)]						

[뒤쪽]																		
신청인 제출서 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 무원 확인사 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정예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 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p>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p> <p>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생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p> <p>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샛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h>항목</th> <th>이용 목적</th> <th>보유기간</th> </tr> <tr> <td>해산급여 대상여부</td> <td>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td> <td>대상자격 조회 시</td> </tr> <tr> <td>장애인 여부</td> <td>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td> <td>대상자격 조회 시</td> </tr> </table>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의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저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로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로 재신청하여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급停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p> <p>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p>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처리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 vertical-align: top; padding: 5px;"> 신청서작성 신청서 작성 신청인(대리신청인) </td> <td style="width: 25%; vertical-align: top; padding: 5px;"> 접수 접수 </td> <td style="width: 25%; vertical-align: top; padding: 5px;"> 등록·심사·자격확인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신청통지 및 서비스제공 </td> <td style="width: 25%; vertical-align: top; padding: 5px;"> 선정통지 및 사후조치 선정통지 및 사후조치 신청인(대리신청인) </td> </tr> <tr> <td>신청서 작성 신청인(대리신청인)</td> <td>접수 읍·면·동</td> <td>등록·심사·자격확인 신청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규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td> <td>선정통지 및 사후조치 선정통지 및 사후조치 사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td> </tr> </table>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신청서작성 신청서 작성 신청인(대리신청인)	접수 접수	등록·심사·자격확인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신청통지 및 서비스제공	선정통지 및 사후조치 선정통지 및 사후조치 신청인(대리신청인)	신청서 작성 신청인(대리신청인)	접수 읍·면·동	등록·심사·자격확인 신청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규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선정통지 및 사후조치 선정통지 및 사후조치 사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신청서작성 신청서 작성 신청인(대리신청인)	접수 접수	등록·심사·자격확인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신청통지 및 서비스제공	선정통지 및 사후조치 선정통지 및 사후조치 신청인(대리신청인)															
신청서 작성 신청인(대리신청인)	접수 읍·면·동	등록·심사·자격확인 신청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규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선정통지 및 사후조치 선정통지 및 사후조치 사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두쪽]																		
신청인 제출서 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기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p>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이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p> <p>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생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p> <p>3. 출산기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샛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h>항목</th> <th>이용 목적</th> </tr> <tr> <td>해산급여 대상여부</td> <td>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여부</td> </tr> <tr> <td>장애인 여부</td> <td>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부</td> </tr> </table>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의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저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로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로 재신청하여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급停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p> <p>8. 이동수당·이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자급보조자 하는 계좌주가 이동 또는 이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이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p> <p>9.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p>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항목	이용 목적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여부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부											
항목	이용 목적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여부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부																	

[별지 제2호서식]

출산지원금 신청 · 접수대장(제8조제2호 관련)

접수번호	호					
보호자 인적사항 (부 또는 모)	주 소	☎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신생아와의 관계		거주기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 생 아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주민등 록번 호	출생일		출생 순위	
확인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대조필					
	직 급		성 명		(인)	
개인정 보취급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과 신생아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논산시 출산장려 ·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논 산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 · 접수대장(제8조제2호 관련)

접수번호	호					
보호자 인적사항 (부 또는 모)	주 소	☎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신생아와의 관계		거주기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 생 아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주민등 록번 호	출생일		출생 순위	
확인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대조필					
	직 급		성 명		(인)	
개인정 보취급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과 신생아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논산시 출산장려 ·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논 산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별지 제 3호서식]

논산사랑 출산용품(임신/출산) 지원 신청 · 접수대장
(제6조제2항 관련)

연 번	구분 ·임신 행복꾸러미 ·출산 탄생꾸러미	지원 날짜	행복/탄생꾸러미 대상자			연락 처	임신 주수	분 만 예정 일	자원 물품	수령 자 (여성 또는 인)
			이름	생년 월일	주소					

[별지 제 3호서식]

논산맘 출산용품(임신/출산) 지원 신청 · 접수대장
(제9조제3항 관련)

연 번	구분 ·임신 행복꾸러미 ·출산 탄생꾸러미	지원 날짜	행복/ 탄생꾸러미 대상자			연락 처	임신 주수	분 만 예정 일	자원 물품	수령 자 (여성 또는 인)
			이 름	생 년 월 일	주 소					

[별지 제 4호서식]

논산사랑 산전검사 지원 신청 · 접수대장
(제6조제2항 관련)

연 번	구분 ·산전검사 ·2차 ·3차 ·기형아검사 ·3차	지원 날짜	산전검사 대상자			연락 처	임신 주수	분 만 예정 일	지원 내용	수령 자 (여성 또는 인)
			이 름	생 년 월 일	주 소					

[별지 제 4호서식]

논산맘 산전검사 지원 신청 · 접수대장
(제9조제3항 관련)

연 번	구분 ·산전검사 ·2차 ·3차 ·기형아검사 ·3차	지원 날짜	산전검사 대상자			연락 처	임신 주수	분 만 예정 일	지원 내용	수령 자 (여성 또는 인)
			이 름	생 년 월 일	주 소					

[별지 제 5호서식]

논산사랑 예비맘 건강검진 지원 신청 · 접수대장
(제6조제2항 관련)

연 번	구 분 ·예비 건강검진	지 날	건강검진 대상자			연락 처	결혼 (예정) 날짜	지원 내용	수령 자 (여성 또는 인)	비 고
			이 름	생 년 월 일	주 소					

[별지 제 5호서식]

논산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청 · 접수대장
(제9조제3항 관련)

연 번	구 분 ·예비 건강검진	지 날	건강검진 대상자			연락 처	결혼 (예정) 날짜	지원 내용	수령 자 (여성 또는 인)	비 고
			이 름	생 년 월 일	주 소					

<신 설>

[별지 제 6호서식]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방지 아-이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체크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자	차기간	신청사유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접전화
	도로명 주소 (주민등록 주소지)		

* 연산체 등 배경 수령방 경우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입하여야하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안전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임신정보 작성이 불필요합니다.

임신 정보	임신한정	분만예정일	
	오기(관 밀(온양 기(기기 호))	()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다태아 구분	[] 단태아 [] 다태아	()

* 의료비수급자 임신 출산 진료자원, 애너지아증권, 신모산상장 건강증진자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기록시행"란 작성

기족 사항	임산부 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라하는 경우 주소기재)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내용		
		국민행복 카드신청	BC카드 (은행) ※ IBK기업, 농협, 신한은행, 경남, 광주, 대구,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부산, 수협, 하나은행 신청 가능	국 제 카 드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신규 신청자의 경우, 발급 회망 카드시 및 회원 은행사를 선택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를 선택합니다. []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지원 * 임신2월 기준 만 19세이하인 청소년입니다.	
	[] 업산체			도로명 주소(주민등록주소)와 달라 경우 작성)
	[] 철분제	수령 방법	[] 직접 수령 [] 택배 수령	
	[] 모자보 건수증			
	[] 맘카드	멤버십 번호		*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能做到
	[] 흡연금지증명 임산부증명			* 임산부한정 기준 만 19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지원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사회서비스진료비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수급자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생계의료급여	
		기부원수	[] 1명 [] 2명 [] 3명 이상	
	[] 계약금	주거형태	[] 단독주택-1기의 주소에 2기구 이상 거주) [] 아파트·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 연립주택·단독주택-1기의 주소에 1기구만 거주) [] 상업시설·상가·공장·비문화우스 등) [] 숙박시설(여관·숙박 등)·민생생활시설(고시원 등) [] 종교·복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하점기	[]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동, 호)	
		동점기(이용방식 택 1)	[] 실물카드 [] 가상카드 (요금차감) * 예·내·현 택	[] 전기(고객번호: , 회사명:)(동, [] 도시기사(납부자번호: , 회사명:)(동, [] 지역난방(사용자번호: , 회사명:)(동,
	[] 산모·신생 아간강민리 지원	지원 유형	[] 단체([]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생네아/ 경제정도가 심한 산모 + 단체아 ([] 유아1명 [] 유아2명) [] 삼째아 이상 / 경제정도가 심한 산모 + 단체아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 소득기준 이하)	
		신청조건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예외 지원대상 [] 생생아 이상 출산기정 [] 셋째아 이상 출산기정 (해당부문)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거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자 산모 []	
		서비스제공장소	[] 지역 [] 기타	

지방 정부 서비 스(군·시)	임신부 청용증정장 지급	자동차(승용차량: 차종·차량: , 생활주기: , 차량번호:)
	임신부 앰블럼 지원	[]
	초보맘 출산준비교실	[]

	[] 신상할수(일), 산모·신생아 제외 둘째인원(명)
신부 말이어 중기자발증지원	
위와 같이 입신서비스 통합처리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신장인 성명 : (사령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임신부 본인만 신청 가능)	
* 본 서식의 서비스명 등은 관행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p style="margin: 0;">추가제출 서류</p> <p style="margin: 0;">1. 신생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임신증명서(임신정보를 오기기에서 등록한 경우 제출 생략) 3. 신민신생아간호증명서(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의사진단서(결병코드 포함), 신민등록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증명서, 기타(소득기준 양화 등) 서류 등) 4. 예나자이용권 : 가상카드 선택 시 영수증 또는 고서 전자오금, 도시가스오금, 지역난방오금</p>	
<p style="margin: 0;">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 style="margin: 0;">주민등록증, 기존면허증명, 장애인증명, 국민초생활수급자증명, 생계급여증명, 의료급여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칙령)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p>	
<p style="margin: 0;">참고사항</p> <p style="margin: 0;">1. 신생하는 곳 : 임신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및 보건소 2. 신생연령 범위 : 임신부 나이</p>	
<p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p> <p style="margin: 0;">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자정부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margin: 0;">행정정보</p> <p style="margin: 0;">*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장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p style="margin: 0;">공동이용</p> <p style="margin: 0;">*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장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p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p>	
<p style="margin: 0;">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임신부명, 본인오기기증명(온기기증명), 담당의사명(의사면허번호))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장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p style="margin: 0;">2. 강경보증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및 출산부동부의 모성보호 제도 임신부(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합니다.</p>	
<p style="margin: 0;">3. 지원기간은 카드수령일(지원금) ~ 분만예정일부터 1년까지입니다.</p>	
<p style="margin: 0;">4. 지원기간 중에 오기기증명에서 임신부가 입원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및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결제가 가능하며, 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혀 포인트가 자동 소멸됩니다.</p>	
<p style="margin: 0;">5. 1세 미만 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p>	
<p style="margin: 0;">6. 청소년 신도 임산출산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장정보를 제공(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신부명, 본인예정일, 오기기증명(온기기증명), 담당의사명(의사면허번호)) 하며,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신행복카드로 발급합니다.</p>	
<p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p>	
<p style="margin: 0;">1. 업체별 및 철문제제 지원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신부로 신고·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신부(기 등록이 해당 사람 없거나 기업·제조·철문제제 지원기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출(모유기·영·제공권한·성형·주민등록번호·주소·분만예정일·다败야 구분)하여 관할 보건소에 임신부로 신고·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margin: 0;">*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장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p style="margin: 0;">2. 택배 수단으로 경기·경북지역으로 분원별 임신·철문제제 가능하여 택배로 분원별 임신·철문제제 수령 및 구제적인 임신출산 관련 정보가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p>	
<p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p>	
<p style="margin: 0;">1.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KTX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에 제공하는 것(보유기간: 최장 3개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고별호, 그 밖에 필수인 정보 등, 기타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p>	
<p style="margin: 0;">*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장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p style="margin: 0;">2. 일련번호(기기 번호)에서 한정 명령 투입 수송(간선·운영자·열차별 승객수)에 따라 운영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p>	
<p style="margin: 0;">3. 일련번호(기기 번호)로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운행일(영수증 및 별도 부수증)이 부여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사와 증명됩니다.</p>	
<p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p>	
<p style="margin: 0;">1. 이 신청서를 접수한 보건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6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및 「주민등록증」에 관한 정보·소득·재산·근로논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사회보장급여의 수혜여부에 관한 정보·그 밖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현황정보·기본계통등록현황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감정·건강·보험·국고보험·산재보험·국민보건·출산국·병무·보훈국·교육·기장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이 요청하거나 관련기관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원상자보존)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p>	
<p style="margin: 0;">2. 신임통지서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족정보 및 고우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6(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9조(민족정보의 처리 제한), 제20조(고우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우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p>	
<p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p>	
<p style="margin: 0;">수행 상명, 주소, 연락처, 어금계좌, 대상자자기판정자(신청서, 통지서 등에 적용)</p>	
<p style="margin: 0;">이용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이용권 제도 본인 확인절차 및 민족도 조사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후금 	
<p style="margin: 0;">수·동·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이용권 실물카드 제작 및 배송, 가상카드(요금지불)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 하위·초과·각제 대상자자기판정자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성이 관리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 	
<p style="margin: 0;">보유 기 5년</p>	
<p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p>	

<p>신도·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p> <p>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건소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안전사랑 및 기족관계 협약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으로는 핵심부록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협약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관계증명·정보·금융·국세·자산·부동산·인구·국적·국적증명·보험·출입국방부·보유금·교당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링 행정정보망(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하고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초기화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일을 고지합니다.</p> <p>2. 신도·신생아 본부부담금 원금은 보건소 1층 건강도시지원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p> <p>구비서류: 신분증, 초본, 통장사본 ※ 자세한 문의: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041-746-0030 (모자보건팀)</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건소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안전사랑 및 기족관계 협약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으로는 핵심부록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협약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관계증명·정보·금융·국세·자산·부동산·인구·국적·국적증명·보험·출입국방부·보유금·교당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링 행정정보망(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하고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초기화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일을 고지합니다.</p> <p>2. 신도·신생아 본부부담금 원금은 보건소 1층 건강도시지원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p> <p>구비서류: 신분증, 초본, 통장사본 ※ 자세한 문의: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041-746-0030 (모자보건팀)</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임산부 전증 주차장 스티커 지원</p> <p>1. 임산부 전용 주차장 스티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산부임신부는 해당 사용 없음)가 임산부 전용 주차장 스티커를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간: 5년, 제공항목: 성·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본인확인일, 대체아 구분하여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앞부지 차지자는 임신 중이거나 본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관내 임산부주차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p> <p>3. 제일급을 원하는 경우 보건소 2층 모성보건실로 직접 수령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1. 임산부 업체를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산부임신부는 해당 사용 없음)가 임산부 119 구급대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간: 5년, 제공항목: 성·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본인확인일, 대체아 구분하여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한 명당 업체를 한 개로 제한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초보당 출산역 교실 지원</p> <p>1. 시전신청으로 진행되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2. 신청은 논산시보건소(041-746-0030)로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p> <p>3. 만들기 재료 배송 등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주소와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1. 입원한 신후·큰아이 등 기사동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도·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p> <p>2. 입원한 신후·큰아이 등 기사동을 지원은 신도·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장소가 논산시야 합니다.</p> <p>3. 최대 세명까지 지원합니다.</p> <p>4. 제일급을 합니다.</p> <p>5. 주된 일수, 인원수 변경 불가합니다.※ 일정 추가 변경 시 제공기관 차감에 의해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p> <p>6.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보건소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유의사항</p> <p>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하위 또는 가능한 방법으로 금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금리를 받게 한 경우, 금리 지급 보수를 소홀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금리를 받은 자 또는 금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액, 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금여가 감지지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아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소득·근로능력·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해당 금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4. 암시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체출하신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확인함</p>							
<p>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처리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신청서작성</td> <td style="width: 33%;">접수</td> <td style="width: 33%;">등록·심사·지역확인</td> </tr> <tr> <td>신청인</td> <td>읍면동 또는 보건소</td> <td>시군구, 보건소</td> </tr> </table> <p>210mm×297mm[백스택(80g/m)²]</p>		신청서작성	접수	등록·심사·지역확인	신청인	읍면동 또는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신청서작성	접수	등록·심사·지역확인					
신청인	읍면동 또는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불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출산장려사업)
- 제6조(지원금 기준 등)
- 제10조(다자녀가정 지원)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임신준비를 위한 예비부부 건강검진지원과 출산모 맘편한 산후건강관리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함.

나. 추계결과

- 세출 : 1,185,400천원

- 출산장려금 : 1,816,980원×530명×1회 = 963,000천 원
- 예비아빠 건강검진지원 : 200,000원 × 50명×1회 = 10,000천 원
- 논산다동이 행복플러스 지역상품권 지원
300,000원×300명×1회 = 90,000천 원
- 맘[**Mom**]편한 우리집 산후 큰아이 등 가사 돌봄 지원
10,200원×350명×산후도우미 이용일 수 = 122,400천 원
 - 1자녀가정: 15일 ×(10,200원×1일 ×1명 /남편) ×100명 = 15,300천 원
 - 2자녀가정: 15일 ×(10,200원×1일 ×2명 /큰아이1,남편)×150명 = 45,900천 원
 - 3자녀가정: 20일 × (10,200원×1일 ×3명 /큰아이2,남편) ×100명 = 61,200천 원

3. 작성자

건강도시지원과장 이 혜 란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185,400	1,209,108	1,233,290	1,257,956	1,283,115	6,168,869
시 비	1,185,400	1,209,108	1,233,290	1,257,956	1,283,115	6,168,869
세 출	1,185,400	1,209,108	1,233,290	1,257,956	1,283,115	6,168,869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175,400	1,198,908	1,222,886	1,247,344	1,272,291	6,116,829
○ 출산장려금	963,000	982,260	1,001,905	1,021,943	1,042,382	5,011,491
○ 다동이행복플러스 지역상품권지원	90,000	91,800	93,636	95,509	97,419	468,364
○ 맘편한우리집 산후 큰아이등 가사돌봄지원	122,400	124,848	127,345	129,892	132,490	636,975
307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	10,000	10,200	10,404	10,612	10,824	52,040
○ 예비아빠 건강 검진비 지원	10,000	10,200	10,404	10,612	10,824	52,04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85,400	1,209,108	1,233,290	1,257,956	1,283,115
	지방세	1,185,400	1,209,108	1,233,290	1,257,956	1,283,11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 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 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제21조

제8조(혼인과 출산)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 · 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 ·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 검진 및 출산 · 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 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관련사항
③④⑤ (생략)

□ 「모자보건법」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예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정보와 요금경감 등(이하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 출산서비스 사전 안내” 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 출산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라 함은 임신서비스를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라 함은 출산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임신·출산서비스 사전안내” 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에 관한정보제공을 말한다.(하는 임신관련 서비스를 통합신청 ·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 사전안내” 라 한다.)

제4조(적용기관) 이 규정은 임신 출산관련 서비스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시·군·구, 읍·면·동 및 시·군·구 보건소에 적용한다.

제5조(통합처리)

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는 출생신고서와 별도로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서류 제출을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 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구비서류를 읍·면·동 또는 통합전자민원 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②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제6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①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주민등록 예정 주소지)의 읍·면·동이 된다.

④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접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처리 신청 접수) ①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 신분증
 2. 임신사실확인서(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동의 시 제출 생략)
 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정,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5. 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6.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7.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해당자에 한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 생략)
- ③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신청 대리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5. 농업경영체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6.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 생략)
8. 출생증명서(국외 출생자에 한함)
9. 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 생략)
10.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③ 통합처리 신청 접수는 출생신고와 함께 한다. 다만, 출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2항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교부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는 출생신고와 함께 한다. 다만, 출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2항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교부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안내) ① 사전안내 대상은 임신·출산 통합서비스 신청목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전안내 대상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해 각각 그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임신·출산관련 공공서비스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참고2

他 시·군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구분	'19년 출생 현황		1인당 지원기준						비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	1째아	2째아	3째아	4째아	5째아	6째아	
시군									
천안시	4,834	1.02	30	50	100	100	100	100	-부 또는 모 -6개월 이상 거주
공주시	548	1.19	200	200	300	500	500	500	-부 또는 모 -6개월 이상 거주 - 2-3회 분할 지급
			2회분할	2회분할	2회분할	3회 분할 200,100,100			
보령시	461	1.10	100	300	500	1,500	3,000	3,000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행복키움수당 10만원 (만 5-10년 분할)
			5년분할	5년분할	10년 분할				
아산시	2,362	1.15	30	50	100	200	200	200	-부 또는 모 -6개월 이상 거주
서산시	1,193	1.31	50	100	500	1,000	1,000	1,000	-1.2째 1개월전 거주 -3째이상 1년전 거주 -행복키움수당 10만원 (출생~만 3세까지))
			1회	1회	2회 분할(1년 후 잔금지급)				
논산시	607	1.18	50	100	200	300	500	500	-부 또는 모 -3개월 전부터 거주
계룡시	223	1.08	50	100	150	150	150	150	-부 또는 모 -6개월 이상 거주 -3월이상 부모 2배 지원
당진시	1,247	1.39	50	100	500	1,000	1,000	1,000	-1.2째 1개월전 거주 -3째이상 1년전 거주 -다자녀 2회분할
			1회	1회	2회 분할(1년 후 잔금지급)				
금산군	207	1.15	500	700	1,000	2,000	2,000	2,000	-부 또는 모 -1년 이상 거주 - 5년~10년 분할
			5년분할	7년분할	10년 분할				
부여군	186	0.85	50	200	500	1,000	1,000	1,000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 2-3회 분할 지급
			일시금	50씩 3년	4년분할	4년분할	4년분할	4년분할	
서천군	169	1.05	100	200	480	860	1,540	2,220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 2-3회 분할 지급
			일시금	일시금	매월5만원 /36개월	매월10만 /36개월	매월5만원 /36개월	매월20만원 /36개월	
청양군	104	1.03	500	1,000	1,500	2,000	3,000	3,000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 3년~6년분할지급
홍성군	574	1.19	50	100	300	500	500	500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예산군	296	1.05	200	400	600	1,000	3,000	3,000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 5년~10년 분할
			일시금	2년 2회분할	3년/3회	5년간 분할지급			
태안군	217	0.93	50	100	200	200	200	200	

※ 15개 지자체 중 출산장려금 분할지급(8개 지자체)

※ 행복키움수당(자체) 월10만원 지원(출생~만36개월까지) : 보령시, 서산시

※ 계룡시 : 셋째아 이상 부모와 함께 주소지 등록 시 2배 지원

참고 3

他 시 · 군 출산용품 등 지원 현황

시·군명	조례명	출산용품 지원	비고
논산시	논산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논산맘임신축하상품권 10만원 - 논산맘출산용품 상품권 20만원 - 논산맘 산모아기사랑꾸러미(7만원상당)	
공주시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출산축하 상품권 10만원 - 우리아기 생애 첫통장 3만원 - 출산용품 세트	
계룡시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예산범위 내 15만원 상당물품 - 맘스토리 스마트앱 구축홍보 - 출생아 소식지 등 축하메세지	
보령시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관내 산부인과이용 초음파쿠폰 - 영양제 · 출산축하용품	
당진시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출산축하선물 10만원 상품권	
서산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아기수당(월 10만원, 만 3세까지) - 출산용품 10만원상당	
홍성군	홍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출산축하선물(아기내복,로션등)	
청양군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50만원 이내 (임신축하금) - 출산축하용품(유아내의 등) 15만원	
연수구 (인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마더박스지원(출산육아용품 15만원)	
순창군 (전남)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마더박스지원(출산용품 20만원)	
은평구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15만원 상당 · 상품권(출산용품 교환권)	
경주시 (경북)	경주시 출산양육에 관한 조례	-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 · 출산용품(기저귀 10만원)	
해남군 (전남)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산장려금(1째 300만원, 2째 350만원, 3째 600만원 4째 720만원) - 난임부부, 임산부초음파지원 등 - 출산축하물품(약 7만원) - 임신관련 진료비지원(16만원) - 공공산후조리원(2주/70% 할인) 154만원	

참고 4

他 시 · 군 산전검사 등 지원 현황

시·군명	조례명	출산용품 지원	비고
논산시	논산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예비맘 산전검사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 태아기형아검사	외부
공주시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예비부부 건강검진 - 임산부산전검사	외부
당진시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 출산축하선물 10만원 상품권 - 산전검사(풍진, 태아기형아, 임신성당뇨, 막달검사)	외부
보령시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가임기 여성(보건소) - 임산부(임부초음파, 태아기형아검사) -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자체 외부
부여군	부여군 출산장려금지원	- 예비맘 산전검사(20만원)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 태아기형아검사	외부 (관외)
예산군	예산군 출산장려금지원조례	- 신혼부부 산전검사(8종) - 임신초기 모성검사(8종) - 태아기형아검사, 당뇨검사	외부
청양군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임산부 산전검사(초음파, 기형아, 임신성당뇨, 혈액, 소변검사등)	자체
홍성군	홍성군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 예비맘 건강검진(풍진 등 17종) - 임산부 산전검사(모성풍진, 기형아 검사, 2차, 임신성당뇨, 막달검사)	자체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 임산부 산전검사 - 임산부 영양제, 출산축하용품	외부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예비맘 건강검진(19종) - 임산부 산전검사(19종)	자체
해남군 (전남)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임산부 초음파검사비 4회 - 기형아 검진권 2회	외부

참고 5

他 시·군 다자녀가정 지원 현황

시·군명	조례명	다자녀 가정 지원	비고
논산시	논산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셋째아 기저귀 지원(5팩)	
천안시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조례	- 3째부터 교복 지원(중,고) 30만원 지원	
보령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 둘째이상 다자녀가정 바우처카드 · 1가정당 10만원, 상수도, 체육시설 등 할인 - 4째 이상 다자녀 자매결연(연 120만원지원)	만18세
서산시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 육아수당 지원(2째 이후, 만3세까지) (1인지원액, 월10만원)	
예산군	예산군 출산장려금지원조례	- 다자녀 대학생 입학축하금 200만원 분할지원(입학/1년 후)	
홍성군	홍성군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 셋째이상 육아지원금(2400만원) (월15만원, 만2세까지 분할)	
김천시 (경북)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 30만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다문화가정)	
여수시 (전남)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 (정액 월6만4천원, 24개월) 연153만원	해남 순천 화천
청주시 (충북)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 3째이상 양육수당 월 15만원(만5세까지)	
부천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다자녀 지원카드발급 및 문화생활 혜택 (둘째이상/ 막내가 만18세까지 지원/ · 박물관, 체육시설 등 50%감면 · 주차요금 감면표시 발급 · 공영주차장 이용 시(2째:20%, 3째:50%, 4째 이상 100%감면)	발급 부천시도 서관18개 소 시청답변 락
송파구 (서울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1사1다자녀 가정 결연사업 · 4째 이상, 저소득3자녀가정 · 월10만원/ 1년간 지원	
순천시 (전남)	순천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3자녀이상 출산가정 한방첩약지원 · 40만원 상당 첨약지원(2주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 소득 관계없이 본인비용지원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3째아이상 학원학습비 지원 (3째 : 50%, 4째 이상: 80%)	
해남군 (전남)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산지원금·양육지원금 분할지원 · 첫째 300만원(일시30, 매월15만원씩18회) · 둘째 350만원(일시80, 매월15만원씩18회) · 셋째600만원(일시120, 매월20만원씩24회) · 넷째이후720만원(일시120, 매월25만원씩24회)	1인 180 만원